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김선교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2040
----------	-------

발의연월일 : 2025. 8. 7.

발 의 자 : 김선교 · 김예지 · 서천호
김승수 · 최보윤 · 김성원
윤상현 · 최은석 · 송석준
안철수 의원(10인)

제안이유

현행법은 임업의 구조를 개선하여 임업인의 권익을 증진하고 임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며, 낙후한 산촌지역을 진흥시켜 그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나아가 국토의 균형적 발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목적으로 제정 및 시행되었음.

우리나라는 국토의 63%가 산림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그 중 66% 이상이 사유림임에도 불구하고, 사유림경영과 관련한 법적 근거가 미비한 부분이 있고, 임업인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이 추진되고 있으나 임가의 소득수준은 농업 대비 75%, 어업 대비 59%('24년 기준)에 불과한 상황임.

여기에 가속화되는 고령화 현상과 지방소멸 위기로 인하여 임업의 근간이 위축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관련 규정을 시급히 정비하고 사유림경영을 활성화하기 위한 보다 장기적인 지원 정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이에 현행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의 제명을 「사유림경영 및 임업·산촌 진흥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고 임업인 체계 개편을 위한 정의 신설 등 전부개정을 통해 사유림경영 활성화와 임업인 지원 정책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고, 산촌경제의 지속적인 발전으로 지역소멸에 대응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법률의 제명을 「사유림경영 및 임업·산촌 진흥에 관한 법률」로 함(안 제명).

나. 임업의 범위에 산림욕장, 치유의 숲, 숲속야영장, 산림레포츠시설, 숲경영체험림, 수목원 및 정원의 조성 또는 관리·운영을 추가하고, 사유림경영, 후계임업인, 전문임업인, 경영임업인, 청년임업인, 스마트임업 등의 정의를 신설함(안 제2조).

다. 법률의 체계 마련을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다른 법률과의 관계를 신설함(안 제3조 및 제4조).

라. 사유림경영·임업 진흥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시행 근거를 마련함(안 제5조).

마. 예비임업인 또는 도시민의 소득 창출 및 산촌 정착을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함(안 제6조).

바. 임산물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안 제8조).

- 사. 임업인이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산림소득을 얻을 수 있도록 산림의
융·복합경영의 지원 근거를 마련함(안 제11조).
- 아. 임산물의 원활한 수급과 적정한 가격 유지를 위하여 임산물 유통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안 제13조).
- 자. 국내산 임산물 소비 촉진 및 임산물 소득 증대를 위한 지원 정책
수립·시행 근거를 마련함(안 제15조).
- 차. 스마트임업 육성과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정책 수립·시행, 스마
트임업 지원센터 지정에 대한 근거를 마련함 (안 제17조 및 제18
조).
- 카. 임산물의 수입 추천 등에 관하여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
한 법률」 제41조에서 규정한 사항을 이관·신설함(안 제19조).
- 타. 사유림경영의 기본원칙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안 제20조).
- 파. 사유림경영지도원의 배치, 임무 등에 관하여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에서 규정한 사항을 이관·신설함(안
제22조).
- 하. 산림경영관리시설을 설치하고, 산주, 지역 주민, 지방자치단체, 환
경단체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 간 갈등 조정을 위하여 사유림경영분
쟁조정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안 제23조 및 제24
조).
- 거. 전문임업인과 경영임업인의 선정·육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안
제37조).

- 너. 예비임업인과 청년임업인의 육성·고용 등에 대한 지원, 산림명문가의 선정에 대한 사항을 신설함(안 제38조, 제39조 및 제40조).
- 더. 한국임업진흥원의 설립 목적에 임업인의 산림소득 증대 및 임업의 산업화 촉진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함(안 제52조).
- 러. 한국임업진흥원의 사업 범위에 임산물 홍보 및 판매촉진, 사유림 경영·임업·산촌 관련 고용 창출 및 창업 지원, 연구개발 성과·기술 실용화 등 기존의 수행 사업을 명확히 하고, 한국임업진흥원에서 기 수행 중인 산림인증제도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안 제53조).
- 머. 수입 임산물의 사용 및 임산물의 유통·생산 등에 관한 벌칙 조항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6조에서 이관·신설함(안 제61조).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사유림경영 및 임업·산촌 진흥에 관한 법률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사유림경영·임업의 지원·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임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하여 임업인의 소득과 권익을 증진하고, 산촌지역의 진흥으로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킴으로써 지역 소멸에 대응하며, 나아가 국토의 균형적 발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임업”이란 영림업(營林業 : 산림용 종자·묘목 생산, 조림(造林), 숲가꾸기 등 산림을 경영하는 업), 임산물생산업, 임산물유통·가공업, 산림서비스업(「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과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휴양림, 산림욕장, 치유의 숲, 숲속야영장, 산림레포츠시설, 숲경영체험림, 수목원 및

정원의 조성 또는 관리·운영을 포함한다), 야생조수사육업과 이에 딸린 업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업을 말한다.

2. “사유림경영”이란 사유림 안에서 조림·숲가꾸기·임목수확·임도 및 산림경영관리시설 설치 등의 산림사업을 통해 목재 등 임산물을 생산하고 산림의 경제·사회·문화·환경 등 다양한 기능을 유지·증진하는 활동을 말한다.
3. “임업인”이란 임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4. “후계임업인”이란 임업인으로서 사유림경영 기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5. “전문임업인”이란 재배품목에 대한 전문기술·지식을 갖춘 후계임업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6. “경영임업인”이란 산림경영에 대한 능력·소양을 갖춘 후계임업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7. “예비임업인”이란 임업에 종사하기 위하여 임업 관련 교육을 이수하거나 실습 또는 창업 준비를 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8. “청년임업인”이란 임업 분야에 종사하고 있거나 창업 또는 취업할 의사가 있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9. “임산물”이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의 임산물을 말한다.

10. “특별관리임산물”이란 소비자의 보호 및 품질향상을 위하여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임산물로서 산양삼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산물(건조된 것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11. “산양삼”이란 「산지관리법」 제2조제1호의 산지에서 재배하고, 이 법 제27조에 따른 품질검사에 합격한 오갈피나무과(科) 인삼속(人蔘屬) 식물을 말한다.

12. “산촌”이란 「산림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13. “산촌진흥지역”이란 「산림기본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지역을 말한다.

14. “산촌진흥특화사업”이란 산촌지역에 특화된 산림과 산림자원을 활용하여 산촌을 자연친화적으로 개발함으로써 산촌에 거주하는 주민의 소득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을 말한다.

15. “스마트임업”이란 임업의 생산성과 품질향상, 비용 절감,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하여 임업 분야에 정보통신기술 등 첨단기술을 접목한 임업을 말한다.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유림경영·임업을 활성화하고 산촌 진흥 및 임업인 소득증대, 산촌 주민의 삶의 질 향상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

야 한다.

② 임업인은 사유림경영 및 임업·산촌 진흥의 주체로서 안전하고 품질좋은 임산물을 안정적으로 생산·공급하고, 산촌의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사유림경영 및 임업·산촌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종합계획의 수립) ① 산림청장은 5년마다 사유림경영·임업 진흥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사유림경영·임업 진흥에 관한 종합계획(이하“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유림경영·임업의 현황과 전망
2. 사유림경영·임업의 진흥 방향 및 목표
3. 사유림경영·임업의 진흥을 위한 중장기 투자계획
4. 사유림경영·임업 관련 교육훈련과 전문인력의 육성 방안
5. 사유림경영·임업 관련 연구와 기술개발 및 보급방안
6. 사유림경영·임업의 홍보 및 정보화 촉진 방안
7. 그 밖에 사유림경영·임업의 진흥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산림청장은 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

기관의 장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산림청장은 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6조(재정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유림경영 및 임업·산촌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는 임업인에게 그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융자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이 경우 산림의 공익성, 투자 기간의 장기성, 저수익성 등 임업의 특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조림 또는 숲가꾸기
2. 산림용 종자 및 묘목의 생산
3. 임산물의 생산·유통·이용·가공 또는 보관
4. 임도의 조성·유지 또는 관리
5. 예비임업인 또는 도시민의 산촌 정착을 위한 시설 또는 장비의 지원
6. 임업경영규모를 늘리기 위한 산림의 취득
7. 그 밖에 임업경영 및 임업소득(임업인의 소득 중 임업을 통하여 얻는 소득을 말한다. 이하 같다) 증대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제2장 임업 진흥

제7조(임업 진흥의 기본원칙) 임업은 산림의 보전과 이용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1. 산림은 「산지관리법」 제4조에 따른 산지의 구분에 따라 계획적으로 관리되어야 한다.
2. 산림은 자연생태계의 자정능력, 생물다양성, 야생 동식물의 서식조건 및 탄소흡수원으로서의 기능 등 산림의 공익기능이 유지·증진될 수 있도록 조성·관리되어야 한다.
3. 산림은 국민의 보건·휴양·치유 및 삶의 질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조성·관리되어야 한다.
4. 산림은 임업의 생산성을 늘리고 그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경영되어야 한다.

제8조(임산물의 품질관리) ① 산림청장은 임업진흥을 위하여 임산물 및 임산 가공품에 대한 품질관리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품질관리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표준규격 및 물류표준화에 관한 사항
2. 임산물 우수관리·품질인증 및 이력 추적관리에 관한 사항
3. 임산물 원산지 표시에 관한 사항
4. 지리적표시에 관한 사항

5. 유전자변형임산물의 표시에 관한 사항
6. 임산물의 안전성조사 및 그 결과에 대한 조치에 관한 사항
7. 임산물 및 임산 가공품의 검사에 관한 사항
8. 임산물의 생산·가공시설 및 위생관리 기준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임산물 및 임산 가공품의 품질관리 등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9조(임업 생산성 향상 지원) ①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산림의 소유구조개선 등 임업의 생산성을 높이는 데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유림의 소유자가 산림의 소유 규모를 늘리기 위하여 산림을 교환 또는 매입하려는 경우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0조(임산물 소득원의 개발·육성 지원) ①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임업소득을 늘리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품목과 구역을 지정하여 토석 외의 임산물 소득원의 개발·육성을 위한 지원 시책을 수립하여 추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 대상 품목과 구역의 지정, 지정변경·해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산림의 융·복합경영 지원) ①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임업인이 지속적이며 안정적으로 임업소득을 얻을 수 있도록 목재생산과 함께 목재생산 이외의 임업에 포함된 사업을 융·복합

적으로 경영하는 데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유형별 경영모형, 적합한 산림작물, 산지재배 기술 등을 개발·보급하여야 한다.

제12조(유통 활성화 지원) ①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임산물의 원활한 수급과 직거래의 활성화 및 가격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임산물 유통시설의 설치·운영 등 임산물 유통 활성화를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임산물 유통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산지종합유통센터 등 관련 시설을 임산물 유통시설 설치·운영하는 자에게 시설자금과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3조(유통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①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임산물의 원활한 수급과 적정한 가격 유지를 위하여 임산물 유통정보에 대한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임산물유통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임산물유통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14조(가공 활성화 지원) ①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임

산물의 원활한 수급, 가격안정 및 우수가공품의 개발·생산·홍보·판매촉진을 위하여 임산물 가공업자에게 가공시설자금을 지원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방법 및 대상, 그 밖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15조(소비 활성화 지원) ①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내산 임산물의 소비를 촉진하고 임업소득을 늘리기 위한 지원 정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방법 및 대상, 그 밖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16조(지속가능한 산림경영 산물 우선구매) ①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이행하기 위하여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에 따른 인증을 받은 산림에서 생산된 임산물 및 가공품의 판매촉진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제품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에 우선구매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제17조(스마트임업 육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스마트임업 육성과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산림청장은 스마트임업 육성을 위하여 5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스마트임업 육성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스마트임업육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스마트임업의 육성 목표 및 기본방향
2. 스마트임업의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3. 스마트임업을 위한 인력 양성 및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
4. 스마트임업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 보급에 관한 사항
5. 스마트임업 관련 기술의 표준화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스마트임업 육성을 위하여 산림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산림청장은 스마트임업 및 관련 산업을 집적화하고 지역단위로 확산시키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신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스마트임업 육성지구(이하 “스마트임업지구”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④ 산림청장은 스마트임업 관련 사업을 스마트임업지구에 우선하여 추진할 수 있다.

⑤ 스마트임업지구의 지정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스마트임업 지원센터의 지정 등) ① 산림청장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스마트임업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공공기관을 스마트임업 지원센터(이하 이 조에서 “지원센터”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스마트임업육성계획 수립 지원
2. 스마트임업을 위한 인력 양성 및 교육·홍보
3. 스마트임업 관련 기술의 표준화, 매뉴얼 개발 등 연구개발 및 지원
4. 스마트임업 현장 컨설팅 및 모니터링
5. 스마트임업 데이터의 수집·분석 및 활용지원
6. 그 밖에 스마트임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산림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라 공공기관을 지원센터로 지정하는 경우 정부는 그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산림청장은 지원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5항에 따른 지정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3. 제2항에 따른 사업을 부실하게 하여 그 사업을 적정하게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⑤ 지원센터의 지정 및 지정취소의 기준·절차, 지정기간, 운영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임산물의 수입 추천 등) ① 「세계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 협정」에 따른 대한민국 양허표(讓許表)상의 시장접근물량에 적용되는 양허세율(讓許稅率)로 임산물을 수입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입할 품목에 대하여 산림청장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품목별 추천 물량, 추천 기준과 그 밖의 추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②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임산물의 수입에 대한 추천 업무를 산림조합중앙회 등 산림 관련 전문단체나 유통 관련 단체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임산물 중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임산물을 수입하는 자에 대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 판매가격과 수입 가격과의 차액(差額)의 범위에서 수입이익금(輸入利益金)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수입이익금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에 따른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에 납입하여야 한다.

⑤ 제3항에 따른 수입이익금을 납부 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국세채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⑥ 제3항에 따라 수입이익금 통지를 받은 자가 통지받은 사항에 대

하여 이의가 있으면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산림청장에게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⑦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으면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 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3장 사유림경영의 활성화

제20조(사유림경영의 기본원칙) 사유림경영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1. 사유림은 산림의 공익기능을 증진하고 산림재해를 방지할 수 있도록 경영되어야 한다.
2. 사유림은 임업소득(임업인의 소득 중 임업을 통해 얻는 소득)을 향상하고 임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할 수 있도록 경영되어야 한다.
3. 사유림은 국민의 건강에 유익하고 안전한 임산물을 생산·공급할 수 있도록 경영되어야 한다.

제21조(사유림경영 지원) ①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유림을 효율적으로 경영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업의 협업경영 및 대리경영에 관한 시책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 ②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규모 있게 임업을 경영하여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겸업임업 · 전업임업 및 기업임업에 관한 시책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제22조(사유림경영지도 등) ① 산림청장은 사유림경영 활성화와 임업 · 임산물 관련 기술의 지도 · 보급을 위하여 사유림경영 지도업무를 산림조합 또는 산림조합중앙회에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사유림경영지도를 할 수 있는 사람(이하 “사유림경영지도원”이라 한다)의 자격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③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한 사유림경영지도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사유림경영지도원을 운영하는 경우, 그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23조(산림경영관리시설의 설치) ① 임업인이 임업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산림에 산림경영관리사, 재배시설 등 경영관리를 위한 시설(이하 “산림경영관리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 ② 사유림경영관리시설의 종류 및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4조(사유림경영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 운영) ① 사유림경영에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분쟁이 있을 경우에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특별시 · 광역시 · 특별자치시 · 도 · 특별자치도(이하 “시 · 도”라 한다)에 분쟁조정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조림수종 선정 등 조림에 관한 사항

2. 기준벌기령, 입목수확구역 등 입목수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사유림경영 활성화와 관련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② 제1항에 따른 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회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도 조례로 정한다.

제4장 특별관리임산물의 관리

- 제25조(특별관리임산물의 생산) ① 특별관리임산물을 생산(특별관리임산물의 종자·종묘의 생산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산물품질관리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기관 또는 단체(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에서 조사한 생산적합성조사 결과를 첨부하여 산림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생산적합성조사 결과를 첨부하지 아니하고 신고할 수 있다.
- ②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생산적합성조사 결과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지 검토하여 신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자가 신고한 사항 중 농림축산식품부령으

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산림청장에게 변경 신고하여야 한다.

④ 산림청장은 제3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2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산림청장이 제2항 또는 제4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⑥ 산림청장은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위하여 실시하는 생산적합성조사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생산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신고·변경신고 또는 신고의 수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6조(생산과정의 확인 등) ① 특별관리임산물을 생산하는 자(이하 “생산자”라 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관리임산물의 생산과정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② 생산자는 특별관리임산물의 생산과정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약 또는 비료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생산자는 제27조에 따른 품질검사 시 제1항에 따라 기록한 생산

과정의 정확성에 관하여 전문기관에서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27조(품질검사) ① 생산자가 특별관리임산물을 유통·판매하고자 하거나 특별관리임산물을 수입한 자(이하 “수입자”라 한다)가 이를 통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문기관에서 미리 품질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산림청장은 품질검사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생산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품질검사를 받은 자가 검사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고 다시 품질검사를 받을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품질검사의 기준·유효기간·절차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8조(폐기명령 등) ① 산림청장은 제2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품질검사를 한 결과 제26조제2항을 위반하였거나 제27조제3항에 따른 품질검사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생산자 또는 수입자에게 판매정지, 폐기 또는 반송 명령을 하여야 한다.

1. 생산자: 생산신고한 구역에서 재배하는 특별관리임산물의 전부 또는 일부

2. 수입자: 수입신고한 특별관리임산물의 전부 또는 일부

② 제1항의 판매정지, 폐기 또는 반송명령을 받은 생산자 또는 수입

자는 명령받은 내용대로 특별관리임산물을 판매정지, 폐기 또는 반송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폐기는 관계 공무원이 참관한 자리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④ 산림청장은 생산자 또는 수입자가 제2항의 판매정지, 폐기 또는 반송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행정대집행법」을 준용하여 특별관리임산물을 폐기할 수 있다.

제29조(품질표시 등) ① 생산자 또는 수입자가 제27조제3항의 품질검사의 기준에 적합한 특별관리임산물을 유통·판매 또는 통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격으로 포장하여야 한다. 구입한 특별관리임산물을 다시 판매하는 자(이하 “판매자”라 한다)의 경우에도 같다.

② 생산자·수입자 또는 판매자가 특별관리임산물을 유통·판매 또는 통관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2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품질검사의 결과를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위치에 표시(이하 “품질표시”라 한다)하여야 한다.

③ 품질표시의 내용·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0조(특별관리임산물의 유통관리) ① 산림청장은 특별관리임산물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전문기관, 특별자치시장·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시의 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하여금 유통·판매되고 있는 제품을 수거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적합한지에 대하여 조사·검사하게 하거나 관련 서류를 열람하게 할 수 있다.

1. 제27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품질검사를 받았는지 여부
 2. 제27조제3항의 품질검사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3. 제2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규격 및 품질표시가 정확한지 여부
- ② 특별관리임산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인은 제1항에 따른 수거·조사·검사 또는 열람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누구든지 제27조에 따른 품질검사를 받은 특별관리임산물 이외의 것을 특별관리임산물로 오인·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1조(정보공개) 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거나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공개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제26조에 따른 생산과정의 확인 내역
2. 제2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품질검사의 결과
3. 제28조에 따른 판매정지, 폐기 또는 반송 명령의 내용

제32조(통계조사) ① 산림청장은 특별관리임산물의 품질관리·육성에 필요한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특별관리임산물의 생산

· 유통·소비 등에 관하여 통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통계의 작성에 관해서는 「통계법」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②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통계조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관련 산업의 사업자에게 필요한 자료·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통계조사의 범위, 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33조(수출 촉진 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특별관리임산물의 국제화와 관련 제품의 수출 촉진을 위하여 특별관리임산물유통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하려는 자에게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특별관리임산물의 국제화 및 수출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특별관리임산물과 관련된 정보·기술·인력의 교류
2. 특별관리임산물과 관련된 국제학술대회·박람회 개최 등
3. 특별관리임산물과 관련된 해외수출을 위한 상담

③ 그 밖에 수출 촉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5장 임업인의 육성

제34조(산림경영 교육·훈련 등 지원) ①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임업소득 증대 및 산림경영 활성화를 위하여 임업인을 대상으로 임업소득 증대 및 산림경영에 관한 교육·훈련 및 상담·자문·지도(이하 “교육·훈련 등”이라 한다) 업무의 지원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산림청장은 교육·훈련 등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절차에 따라 교육·훈련 등을 전문적으로 실행하는 기관(이하 “전문교육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③ 산림청장은 교육·훈련 등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교육기관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전문교육기관이 교육·훈련 등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산림청장에게 교육·훈련 등 프로그램을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⑤ 산림청장은 제4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30일(변경신고의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⑥ 산림청장이 제5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⑦ 산림청장은 농림축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교육기관의 지정 기준 준수 여부, 교육프로그램 운영 현황 등에 대한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제35조(전문교육기관 지정의 취소 등) ① 산림청장은 제34조제2항에 따라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받은 자가 제34조제7항에 따른 점검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34조제2항에 따른 지정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제34조제2항에 따라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교육과정을 개설하지 아니하거나 2년 이상 전문교육기관을 운영하지 아니하는 경우
4. 제34조제4항에 따라 신고한 교육·훈련 등 프로그램과 다르게 운영한 경우

②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전문교육기관의 지정이 취소된 자(법인

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그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항제1호의 사유로 지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그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에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6조(임업분야 교육 지원 등) ① 산림청장은 임업분야 수요에 맞는 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임업 및 산림 분야 계열학교가 실시하는 임업실습교육, 임업창업교육 등 임업분야 교육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산림청장은 임업분야의 고용 창출 및 창업에 대한 활성화 사업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교육 지원과 제2항에 따른 활성화 사업의 방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7조(임업인 등의 육성·지원) ①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임업인을 선정하고 전문임업인의 육성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영임업인을 선정하고 경영임업인의 육성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③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전문임업인으로 선정된 자 또는 경영임업인으로 선정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제2호·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면 그 선정을 취소하여야 한

다.

1. 전문임업인 또는 경영임업인이 선정 요건을 상실한 경우
2. 전문임업인 또는 경영임업인이 사망한 경우
3. 이 법 또는 「산지관리법」·「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4. 전문임업인 또는 경영임업인으로 선정된 자가 그 취소를 원하는 경우
5.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전문임업인 또는 경영임업인으로 선정된 경우

제38조(예비임업인 및 청년임업인의 육성·지원)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비임업인 및 청년임업인이 임업에 안정적으로 진입·정착할 수 있도록 필요한 경우 시책을 수립·시행하거나, 제6조에 따른 재정지원을 할 수 있고, 청년임업인의 경우 우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39조(청년임업인 고용에 대한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후계임업인 육성을 위하여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농업경영체가 청년임업인을 고용하는 경우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40조(산림명문가의 선정) ① 산림청장은 3대(1대부터 3대까지 직계존비속)에 걸쳐 산림을 경영하고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를 산림명문가로 선정하여 포상하고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산림명문가 선정대상 가문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산림명문가 선정에서 제외하며, 이미 산림명문가로 선정된 가문에 대하여는 그 선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산림명문가의 선정기준, 선정 및 취소 절차,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41조(임업인의 날) ① 임업·산촌의 소중함을 국민에게 알리고, 임업인의 긍지와 자부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매년 11월 1일을 임업인의 날로 정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임업인의 날에 적합한 행사 등 사업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장 산촌의 진흥

제42조(산촌진흥을 위한 기본방향) 산촌진흥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1. 산촌을 산림관리의 거점지역으로 육성하여 산림자원의 보전·증식을 적극 도모하여야 한다.
2. 산림생태계 및 동·식물 보존 등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산촌을 자연친화적으로 개발하여야 한다.

3. 산촌의 고유한 문화와 전통을 계승·발전하여야 한다.
4. 산촌은 지역균형발전 및 인구감소 위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관리되어야 한다.

제43조(산촌진흥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산림청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
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 10년마다 산촌진흥기
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산촌의 산림자원 조성·경영 기반을 확충하는 등 산림의 종합 정
비에 관한 사항
2. 농림수산물의 생산·가공·판매 및 산림휴양자원을 활용한 산촌
주민의 소득증대에 관한 사항
3. 산촌의 도로·주택·상하수도 등 주거환경의 조성·정비에 관한
사항
4. 산촌의 고유한 문화와 전통의 계승·발전에 관한 사항
5. 도시와의 교류 촉진에 관한 사항
6. 도시민의 산촌 정착 지원에 관한 사항
7. 산촌의 녹색관광 및 생태관광 육성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산촌진흥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산림청장은 산촌의 사회적·경제적·지역적 여건 변화 등을 고
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기본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 ④ 산림청장은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이 조에서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⑤ 산림청장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표하여야 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에게 통보하며,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⑥ 산림청장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⑦ 시·도지사(제2조제12호에 해당하는 산촌이 없는 지역의 시·도지사는 제외한다. 이하 제44조, 제45조 및 제50조에서 같다)는 기본계획에 따라 관할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시·도 산촌진흥계획(이하 “시·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 ⑧ 시장·군수·구청장(제2조제12호에 해당하는 산촌이 없는 지역의 시장·군수·구청장은 제외한다. 이하 제44조부터 제47조, 제50조 및 제51조에서 같다)은 시·도계획에 따라 관할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산촌진흥촉진계획(이하 “시·군·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 ⑨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변경, 시·도계획 및 시·군·구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4조(산촌조사) ① 산림청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초조사를 전국의 산촌에 대하여 10년마다 실시하여야 한다.

- ②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시·도계획 또는 시·군·구계획을 수립하려면 관할지역의 산촌에 대하여 필요한 상세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기초조사 또는 상세조사의 내용 및 조사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④ 산림청장,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효율적인 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단체에 기초조사 또는 상세조사를 위탁할 수 있다

제45조(산촌진흥특화사업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지역 안의 산촌진흥지역에서 산촌진흥특화사업을 추진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산촌진흥특화사업계획(이하 “특화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도지사에게 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1. 산촌진흥특화사업의 목적·추진방향·기대효과
2. 산촌진흥특화사업의 시행기간·시행지역 등 사업개요
3. 산촌진흥특화사업에 필요한 사업비의 조달계획 및 연차별 투자계획

4. 산촌진흥특화사업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5. 자연환경, 지역의 역사와 문화, 인적자원 등 사업에 활용할 수 있는 기반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산촌진흥특화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의 조례(이하 “시·도 조례”라 한다)로 정하는 사항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특화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주민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그 의견을 반영하여야 한다.

③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특화계획의 승인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승인 전에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특화계획을 승인한 경우에는 시·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④ 시·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특화계획을 승인하면 이를 산림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특화계획의 변경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준용한다. 다만, 시·도 조례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시·도지사의 승인 없이 시장·군수·구청장이 변경할 수 있다.

제46조(산촌진흥특화사업의 시행자) 시장·군수·구청장은 산촌진흥특화사업을 직접 시행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시행하게 할 수 있다.

제47조(산촌진흥특화사업비의 지원 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산촌진흥특화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하여 줄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산촌진흥특화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와 관련된 사업의 예산을 우선적으로 배정할 수 있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산촌진흥특화사업 시행지역 안에 있는 산림을 관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림사업을 하는 자에게는 우선적으로 사업비의 전부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48조(「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적용 특례) ① 산림청장은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산촌진흥특화사업 시행지역의 준보전국유림을 필요한 범위에서 제46조에 따른 산촌진흥특화사업의 시행자(이하 “시행자”라 한다)에게 매각 또는 교환할 수 있다.

② 산림청장은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별도의 기준에 따라 산촌진흥특화사업 시행지역의 국유림을 필요한 범위에서 시행자에게 사용허가 또는 대부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국유림의 사용허가 또는 대부를 받은 시행자는 목적사업 수행을 위하여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설물의 기부·철거 또는 원상회복을 조건으로 해당 국유림에 건물이나 그 밖의 영구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

다.

제49조(산촌활성화지원센터의 지정 등) ① 산림청장은 도시민의 산촌 정착 및 산촌지역 경제의 활성화와 임업인의 소득향상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산촌활성화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1. 제52조에 따른 한국임업진흥원
2. 「산림조합법」 제2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조합 또는 중앙회
3. 그 밖에 전문인력과 조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

② 지원센터의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산촌 정착을 희망하는 사람에 대한 상담, 정보제공 및 교육·훈련
2. 지역의 산림자원을 활용한 창업 및 기술 지원
3. 산촌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사회적 기업 등의 설립 지원
4. 임업인의 소득향상을 위한 임업기술 지원
5. 그 밖에 산촌 주민에 대한 지원 및 산촌지역 경제의 활성화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③ 산림청장은 지원센터에 제2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시행·관리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지원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지정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중단한 경우
4. 제55조를 위반하여 산림청장에게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검사를 거부·방해·기피한 경우

⑤ 제1항에 따른 지원센터의 지정 절차 및 제4항에 따른 지원센터 지정취소 및 시정명령의 세부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0조(국공유 임산물의 활용) 산림청장,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산촌진흥지역 안에 있는 산림을 관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산촌진흥지역 안의 국공유 임산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산촌진흥지역의 주민에게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다.

제51조(산촌진흥특화사업 시행지역의 사후관리 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산촌진흥특화사업이 끝난 지역에 대하여 필요한 때에는 산촌진흥특화사업으로 설치한 시설·장비의 운영·관리 및 산촌지역 일자리의 유지·개선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산촌진흥특화사업의 시행으로 설치한 시설·장비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7장 한국임업진흥원

제52조(한국임업진흥원의 설립) ① 산림청장은 임업인의 산림소득 증대 및 임업의 산업화 촉진을 위하여 한국임업진흥원을 설립한다.

② 한국임업진흥원은 법인으로 한다.

③ 한국임업진흥원의 설립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3조(한국임업진흥원의 사업) ① 한국임업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임업인의 산림경영정보 및 임업·산림에 관한 정보·통계의 생산·활용 지원
2. 제25조부터 제27조까지 및 제30조에 따른 특별관리임산물 품질관리 지원
3. 임업기계 장비 품질인증
4. 임업에 관한 시험·분석·조사·감정 및 기술 지원
5. 임업연구 성과의 기술 사업화 촉진 및 기술이전 지원
6. 산림자원 및 입지조사 설계·평가
7. 해외산림자원개발, 국제산림협력 사업 및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 녹색성장 기본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임업분야 국제감축사업
8.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에 따른

산림탄소상쇄제도의 운영·관리

9. 임업 분야 및 산촌지역의 고용 창출 및 창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 사업
 10. 임산물 및 임산물을 활용한 가공제품의 홍보·판매촉진 지원
 11. 임업에 관한 전문인력 양성 및 제34조 및 제35조에 따른 전문교육기관의 지정·취소·관리 및 지원
 12. 다른 법령에 따라 한국임업진흥원이 수행할 수 있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13. 그 밖에 임업·산촌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한국임업진흥원에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2호 사업은 한국임업진흥원에 위탁한다.
-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한국임업진흥원의 설립 및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 또는 지원할 수 있으며, 그 설립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국유재산법」, 「물품관리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국유·공유 재산 및 물품, 국유임산물을 한국임업진흥원에 무상으로 양여 또는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 ④ 제3항에 따른 양여, 대부 및 사용·수익의 내용·조건 및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제1항제4호에 따른 임업에 관한 시험·분석·조사·감정 및 기술지원을 신청하거나 성적증명서의 발급 등을 의뢰하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임업진흥원에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54조(한국임업진흥원 운영 등) ① 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한국임업진흥원을 지도·감독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업무·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한국임업진흥원의 장부·서류·시설과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1. 제53조제1항과 관련된 업무에 관한 사항

2. 각 회계연도의 사업계획 수립·집행 및 예산편성과 결산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산림청장은 한국임업진흥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산림청 또는 그 소속 기관의 공무원 중 일부를 한국임업진흥원에 파견 근무하게 할 수 있다.

③ 한국임업진흥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8장 보칙

제55조(보고 및 검사) ① 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하여금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무소 등을 출입하여 서류나 물건을 조사·검사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

1. 제19조에 따라 산림청장의 추천을 받아 임산물을 수입하는 자
2. 제49조제1항에 따른 산촌활성화지원센터 운영자

② 제1항에 따라 조사·검사하거나 질문을 하는 공무원은 그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56조(청문) 산림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권한의 구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제18조제4항에 따른 스마트임업지원센터의 지정취소
2. 제35조제1항에 따른 전문교육기관 지정의 취소
3. 제37조제3항제1호·제3호 및 제5호에 따른 전문임업인 및 경영임업인의 선정의 취소
4. 제49조제4항에 따른 산촌활성화지원센터의 지정취소

제57조(수수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1. 제25조제1항에 따른 생산적합성조사를 신청하는 자
2. 제2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품질검사를 신청하는 자

제58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산림청장은 이 법에서 규정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산림청장의 승인을 받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

③ 산림청장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59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53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한국임업진흥원의 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9장 벌칙

제6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7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품질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특별관리임산물을 유통·판매 또는 통관한 자
2. 제2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품질검사를 고의로 잘못하였거나 품질검사 결과를 거짓으로 통보한 자
3. 제28조제2항에 따른 판매정지, 폐기, 재검사 또는 반송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게을리 한 자
4. 제29조제2항에 따른 품질표시를 하지 아니하고 특별관리임산물을

유통·판매 또는 통관하였거나 거짓으로 품질표시를 한 자

②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지은 자와 제30조제3항을 위반하여 표시 또는 광고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9조제1항에 따라 수입 추천을 받은 용도 외의 용도로 수입 임산물을 사용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제2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가 수리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특별관리임산물을 생산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61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26조제1항을 위반하여 생산과정을 기록·관리하지 아니하였거나 생산과정을 거짓으로 기재한 자
2. 제29조제1항에 따른 규격으로 포장하지 아니하고 특별관리임산물을 유통·판매 또는 통관한 자
3. 제30조제2항을 위반하여 수거·조사·검사 또는 열람을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25조제3항을 위반하여 중요한 사항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26조제2항을 위반하여 생산과정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지
농약 또는 비료를 사용한 자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
라 산림청장,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징수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에 관한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전에 행하여진 위
반행위와 그 행정처분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행위자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결정·
처분·절차·조사 그 밖의 행위는 이 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
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제1항제18호를 삭제한다.

② 개발도상국 산림을 통한 온실가스 배출 감축 및 탄소 축적 증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2항 중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9조의

2”를 “「사유림경영 및 임업·산촌에 관한 법률」 제52조”로 한다.

③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24호를 삭제한다.

④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전단 중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를 “「사유림경영 및 임업·산촌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로 한다.

제21조제1항제4호 중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을 “「사유림경영 및 임업·산촌에 관한 법률」”로 하고, 같은 조 제7호 중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를 “「사유림경영 및 임업·산촌에 관한 법률」 제10조”로 한다.

⑤ 농어업인 부채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를 “「사유림경영 및 임업·산촌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로 한다.

⑥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1항제30호를 삭제한다.

⑦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

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33호를 삭제한다.

⑧ 등대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11호를 삭제한다.

⑨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2항 중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9조의 2”를 “「사유림경영 및 임업·산촌에 관한 법률」 제52조”로 한다.

제36조의5제1항제1호 중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9조의 2”를 “「사유림경영 및 임업·산촌에 관한 법률」 제52조”로 한다.

⑩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1항제19호의2를 삭제한다.

⑪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22호를 삭제한다.

⑫ 산림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 중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9조의 2”를 “「사유림경영 및 임업·산촌에 관한 법률」 제52조”로 한다.

⑬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임업기능인의 양성) 산림청장 및 시·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업분야의 기능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기능인을 양성하고, 취업알선, 고용안정 및 근로조건개선 등 기능인의 지위를 높여줄 수 있는 시책을 수립하여 추진할 수 있다.

⑭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0호 중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을 “「사유림경영 및 임업·산촌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⑮ 산림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9조의2”를 “「사유림경영 및 임업·산촌에 관한 법률」 제52조”로 한다.

⑯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호 중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을 “「사유림경영 및 임업·산촌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으로 한다.

제37조제1항제3호를 삭제한다.

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2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임업기계장비”란 임업분야에 사용되는 기계, 장비 및 도구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23조제2항제2호 중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임업후계자 또는 독립가(篤林家: 모범 임업경영인) 등”을 “「사유림경영 및 임업·산촌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따른 전문임업인, 경영임업인 등”으로 한다.

제2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18조”를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의2”로 한다.

제31조를 삭제한다.

제34조제6항 중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9조의2”를 “「사유림경영 및 임업·산촌에 관한 법률」 제52조”로 한다.

제41조를 삭제한다.

제76조를 삭제한다.

- ⑮ 법률 제20751호 산림재난방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1조제2항제7호 중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9조의2”를 “「사유림경영 및 임업·산촌에 관한 법률」 제52조”로 한다.

- ⑯ 산림조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9호 중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을 “「사유림경영 및 임업·산촌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⑳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32호를 삭제한다.

㉑ 산지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1호가목3)을 삭제한다.

㉒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2항 중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을 “「사유림경영 및 임업·산촌에 관한 법률」”로 한다.

㉓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4제1항 중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9조의2”를 “「사유림경영 및 임업·산촌에 관한 법률」 제52조”로 한다.

㉔ 인삼산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1항 중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2”를 “「사유림경영 및 임업·산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로 한다.

㉕ 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을 “「사유림경영 및 임업·산촌에 관한 법률」”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를 “「사유림경영 및 임업·산촌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로 한다.

㉔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6조제1항제19호를 삭제한다.

㉕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8조제2항제1호가목 9) 중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을 “「사유림경영 및 임업·산촌에 관한 법률」”로 한다.

㉖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22호를 삭제한다.

㉗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9조의2”를 “「사유림경영 및 임업·산촌에 관한 법률」 제52조”로 한다.

제37조제2항 중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9조의2”를 “「사유림경영 및 임업·산촌에 관한 법률」 제52조”로 한다.

㉘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21호를 삭제한다.

제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